

춘천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890(본소), 2017나906(반소) 판결 [건물 및
부속물매수청구 · 토지인도]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나890(본소), 2017나906(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546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10. 18.

판결 선고 2018. 1. 10.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7. 5. 16. 선고 2016가단5460(본소), 2017가단50016(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본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강원 홍천군 C 전 1,980㎡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단층 창고 50㎡, 같은 도면 표시 35, 34, 33, 32, 45, 44, 43, 42, 41, 40, 39, 6, 38, 37, 36,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단층 건물 108㎡, 같은 도면 표시 22, 28, 27, 26, 25, 24,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단층 화장실 4㎡를 각 철거하고, 위 'ㄱ', 'ㄴ', 'ㄷ' 부분 토지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장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성환

판사문지용

판사오에스더

별지